

## 충청북도사무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

충청북도사무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별표 1 ) 중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기반조성과를 농지개량과로 농산물유통과를 원예유통과로 도시계획과를 지역계획과로 한다.

( 별표 1 ) 중 회계과소관 제 2 호 다음에 제 3 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분 야 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회 계 과	3	◦ 도유폐천부지관리및 매각	지방재정법 제 73 조

( 별표 1 ) 중 사회과소관 제 1호 내지 제 25 호를 제 1 호내지 제 21 호로 하고 제 22 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분 야 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사 회 과	22	◦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 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 14 조 제 5 항

( 별표 1 ) 중 보건과소관 제 72 호 다음에 제 73 호 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분 야 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보 건 과	73	◦ 병원개설 허가	의료법 제30조 제 4 항

( 별표 1 ) 중 환경관리과 소관 제 1 호 다음에 제 2 호 내지 제 10 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분 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관리과	2	○ 호소특정시설의 설치신고	수질환경보전법 제36조
	3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폐기물관리법 제 10 조 제 1 항
	4	○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허가. 변경허가및 수수료징수기준 [ 다만제17조제1항중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배출시설의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만을 전문으로 수집. 운반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는제외 ]	동법 제17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5	○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의허가 취소 영업정지 명령등 행정처분	동법 제19조 제 1 항 제 2 항
	6	○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신고	동법 제44조의2 제1항
	7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동법 제45조제1항 제2항
	8	○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불이행 에 대한 대집행	동법 제46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관리과	9	◦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취소및 영업정지 처분시의 청문	동법 제 57 조
	10	◦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 63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 별표 1 ) 중 환경지도과 소관 제 1 호 다음에 제 2 호 내지 제 9 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지도과	2	◦ 생활소음의 규제	소음진동규제법 제39 조 내지 제 41 조
	3	◦ 환경감시원의 임명	환경정책기본법 제39 조
	4	◦ 생활악취의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30 조
	5	◦ 건설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규제법 제23 조 내지 제 27 조
	6	◦ 교통소음진동의 규제	동법 제28조내지 제31조
	7	◦ 보고및 검사	동법 제 51 조
	8	◦ 청 문	동법 제 54 조
	9	◦ 호소특정시설의 개선명령	수질환경보전법 제 37조

( 별표 1 ) 중 축산과 다음에 지역경제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지역경제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소매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장의 개설허가</li> <li>나. 대형점의 개설허가</li> <li>다. 시장의관리자 지정</li> <li>라. 시장개설자등에 대한 권고</li> <li>마. 개업등의 신고</li> <li>바. 지위의승계및 사업의 양도 승인, 양수신고</li> <li>사. 영업정지및 허가의취소</li> <li>아. 과징금 처분</li> <li>자. 청 문</li> <li>차. 보 고</li> <li>카. 과태료 부과징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소매진흥법 제 6 조</li> <li>동법 제 13 조의 2</li> <li>동법 제 7조 동법시행령 제 9 조</li> <li>동법 제 9 조</li> <li>동법 제 10 조</li> <li>동법 제 11 조 동법시행령 제 10 조</li> <li>동법 제 12 조</li> <li>동법 제 23 조</li> <li>동법 제 24 조</li> <li>동법 제 50 조 제 1 항</li> <li>동법 제 58 조</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권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상품권 발행등록및 취소등</li> <li>나. 상품권 발행공탁및 공탁의 신고 공탁물반환 승인</li> <li>다. 상품권 발행자에 대한 명령, 보고, 검사, 감독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권법 제 7 조 제 31 조</li> <li>동법 제 14 조 동법 제 17 조</li> <li>동법 제 28 조 제 29 조 제 30 조 제 33 조</li> </ul>

분 야 별	인 권 번 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3	○ 노동조합의 업무검사	노동조합법 제 30 조
	4	○ 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및 결과보고	동법시행령 제 14 조 제 15 조
	5	○ 노동조합의 설립·변경및 해산신고	노동조합법 제 13 조 제 31 조
	6	○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규약의변경, 보완명령및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나. 임시총회 소집 다. 단체협약 신고수리및 변경 취소 명령 라. 노동쟁의 신고수리 마. 직장폐쇄및 신고수리 바. 노동쟁의 행위신고 사. 노동조합총회및 대의원 대회 개최 결과보고 ( 2 개시군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 제외 ) 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위임 결과보고 ( 2 개시군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 제외 ) 자. 노동조합의 지역적 구속력 차. 단체협약 신고수리및 변경 취소 명령 카. 노동조합총회 소집신고	노동조합법 제 16 조 제 21 조 동법 제 26 조 제 3 항 동법 제 34 조 제 2항및 제 3 항 동법 제 16 조 동법 제 17 조 동법시행령 제 8 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 15 조 동법 제 33 조 노동조합법 제 38 조 동법 제 34 조 동법시행령 제 14 조

( 별표 1 ) 중 상정과 소관을 삭제 한다.

( 별표 1 ) 중 공업과 소관 제 6 호 다음에 제 7 호내지 제 11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공업과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권한</li> <li>가. 고압가스 제조허가</li> <li>나. 고압가스 제조 변경허가</li> <li>다. 사업개시, 휴지, 재개, 폐지 신고</li> <li>라. 법인의 대표자 변경신고</li> <li>마.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및 위해예방 조치명령</li> <li>바. 안전관리자 채용, 해임또는 퇴직신고</li> <li>사. 허가의 취소등</li> <li>아. 과태료 부과징수</li> <li>자. 보고, 검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4 조</li> <li>동법 제 4 조</li> <li>동법 제 7 조</li> <li>동법 시행규칙 제 4 조 제 2 항</li> <li>동법 제 24 조</li> <li>동법 제 15 조</li> <li>동법 제 9 조</li> <li>동법 제 43 조</li> <li>동법 제 26 조</li> </ul>

분야별	인원 단위	사무명	근거법령
공업과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 변경 ) 허가</li> <li>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변경 ) 허가</li> <li>다. 법인의 대표자 변경신고</li> <li>라. 사업개시, 휴지, 재개, 폐지신고</li> <li>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 승계 신고</li> <li>바. 공급자의 공급중지 신고및 위해예방 조치명령등</li> <li>사. 안전관리자 채용, 해임, 퇴직 신고</li> <li>아. 공급규정(변경) 승인</li> <li>자. 허가의 취소등</li> <li>차. 과태료 부과징수</li> <li>카. 조정명령</li> </ul> </li> </ul>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제 3 조</p> <p>동법 제 3 조</p> <p>동법 시행규칙 제 4 조 제 2 항 동법 제 6 조</p> <p>동법 제 7 조</p> <p>동법 제 32 조</p> <p>동법 제 14 조</p> <p>동법 제 26 조</p> <p>동법 제 8 조</p> <p>동법 제 48 조</p> <p>동법 제 34 조</p>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관리자 채용, 해임, 퇴직 신고</li> </ul>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3 조 제 2 항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화석유가스및 도시가스사용 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및 그 부대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시공자 등록</li> </ul>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 제 15 조 제 6 항및 도시가스 사업법 제 12 조 제 4 항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의 채용, 해임신고</li> </ul>	도시가스사업법 제 29조

( 별표 1 ) 중 치수과 소관 제 17호, 제 21 호, 제 66 호, 제 75 호 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 78 호 다음에 제 79 호 내지 제 86 호를 신설한다.

분 야 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치 수 과	17	○ 등 지방및 준용하천의 토석 사력 기타 하천산출물 채취 허가	하천법 제 25조 제 1 항
	21	○ 등 하천의 현저한 오손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의 허가	동법제 25 조 제 1 항 제 10 호
	66	○ 유선및도선의 요금, 운임의 승인	유선및 도선사업법 제 34 조
	75	( 생 략 )	하천법 제 76 조
	79	○ 실효된 허가의 효력회복의 조치	하천법 제 70 조 제 1항 의 단서및 제 2 항
	80	○ 하천감시원의 임명과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시정 명령 권한	동법 제 71 조 제 1 항
	81	○ 보상청구	법률제 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 토지의 보상에 관한규정 제 5조 제1항내지 제6항
	82	○ 보상대상자의 결정	동규정 제 6 조
	83	○ 보상금액의 산정	동규정 제 9 조
	84	○ 보상금 지급 통지	동규정 제 11 조
	85	○ 소유권 이전등기	동규정 제 13 조 제 2항 및 제 3 항
86	○ 편입토지의 점용및 사용	동규정 제 14 조	

( 별표 1 ) 중 도로과 소관 제 29호 다음에 제 30 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분 야 별	인 건 수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 로 과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변 휴게소 설치 허가 ( 지방도 )</li> </ul>	도로법제 50조 제 4 항 제 5 항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제 3 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산림과	1- 25	( 생 략 )		산림 녹지과	1-25	( 현행과같음 )	
기반 조성과	1- 5	( 생 략 )		농지 개량과	1- 5	( 현행과같음 )	
농산물 유통과	1- 4	( 생 략 )		원예 유통과	1- 4	( 현행과같음 )	
도시 계획과	1- 15	( 생 략 )		지역 계획과	1-15	( 현행과같음 )	
회계과	1 - 2	( 생 략 ) ( 신 설 )		회계과	1-2	( 현행과같음 )	
사회과	1 - 12	( 생 략 )		사회과	1-12	( 현행과같음 )	지방재정 법제73조
	13	◦ 노동조합의 업무검사				( 삭 제 )	
	14	◦ 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및 결과보고				( 삭 제 )	
	15- 21	( 생 략 )				( 현행과같음 )	
	22	◦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및 해산신고				( 삭 제 )	
	25	◦ 노동조합에 관한권한  ( 신 설 )				( 삭 제 )	
					22	◦ 사회복지법인임원 취임 승인	사회복지 사업법 제 14 조 제 5 항

현행				개정			
분야별	인별 면허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인별 면허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과	1 - 72	( 생 략 ) ( 신 설 )		보건과	1-72	( 현행과같음 )	
					73	◦ 병원개설 허가	의료법 제 30 조 제 4 항
환경관리과	1	( 생 략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환경관리과	1	( 현행과같음 )	
					2	◦ 호소특정시설의 설치신고	수질환경 보전법 제 36 조
					3	◦ 폐기물처리시설 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폐기물 관리법 제 10 조 제 1 항
					4	◦ 일반폐기물수집. 운반허가. 변경허가 및수수료징수기준 [ 다만제17조제1항 중다량배출일반 폐기물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관련 하여배출되는 일반 폐기물) 만을 전문 으로수집. 운반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는제외 ]	동법 제 17 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현행				개정			
분야별	포번	사무명	근거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
환경관리과		(신설)			5	○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취소 및 운영정지 처분	동법제19조제1항제2항
		(신설)			6	○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신고	동법44조의제1항
		(신설)			7	○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동법제45조제1항제2항
		(신설)			8	○ 폐기물처리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동법제46조
		(신설)			9	○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취소 및 운영정지 처분시의	동법제57조
		(신설)			10	○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제63조제2항내지4항
환경지도과	1	(생략)		환경지도과	1	(현행과같음)	
		(신설)			2	○ 생활소음의 규제	소음진동규제법제39조내지제41조
		(신설)			3	○ 환경감시원의 임명	환경정책기본법제39조
		(신설)			4	○ 생활악취의 규제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신설)			5	○ 건설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규제법제23조내지제27조

현행				개정			
분야별	인건비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인건비	사무명	근거법령
(신설)	(신설)	(신설)		지역 경제과	6	◦ 교통소음진동의 규제	동법 제 28 조 내지 제 31 조
		(신설)			7	◦ 보고및 검사	동법 제 51 조
		(신설)			8	◦ 청문	동법 제 54 조
		(신설)			9	◦ 호소특정시설의 개선명령	수질환경 보전법 제 37 조
		(신설)			1	(현상정과 1호같음)	
		(신설)			2	◦ 상품권 관리에 관한 다음의권한 가. 상품권 발행 등록및 취소등 나. 상품권발행공탁 및 공탁의신고 공탁물 반환승인 다. 상품권발행자에 대한명령, 보고, 검사, 감독등	상품권법 제 7 조 제 31 조  동법 제 14 조 제 17 조  동법 제 28 조 제 29 조 제 30 조 제 33 조
		(신설)			3	(현 사회과 13호와 같음)	
		(신설)			4	(현 사회과 14호와 같음)	
		(신설)			5	(현 사회과 22호와 같음)	
		(신설)			6	(현 사회과 25호와 같음)	
상정과	1- 6	(생략)		상정과	1- 6	(삭제)	

현행				개정			
분야별	인원	사무명	근거	분야별	인원	사무명	근거
공업과	1- 6	( 생 략 ) ( 신 설 )		공업과	1- 6 7	( 현행과 같음 ) ○ 고압가스안전 관리에관한다음권한 가. 고압가스제조 허가 나. 고압가스제조 변경허가 다. 사업개시. 휴지. 재개. 폐지신고 라. 법인의대표자 변경신고 마. 공급자의 공급 중지신고및위해 예방 조치명령 바. 안전관리자채용. 해임또는 퇴직 신고 사. 허가의취소등 아. 과태료 부과징수 자. 보고. 검사등	고압가스 안전관리 제4조  동법 제 4 조  동법 제 7 조  동법시행 규칙 제4 조 제2항  동법 제 24 조  동법 제 15 조  동법 제 9 조  동법 제 43 조  동법 제 26 조
		( 신 설 )			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관한 다음권한 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 허가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및 관리 제3조

현행				개정			
분야별	인원	사무명	근거법	분야별	인원	사무명	근거법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변경) 허가	동법 제 3 조
						다. 법인의대표자 변경신고	동법시행 규칙 제4 조 제2항
						라. 사업개시: 휴지. 재개. 폐지신고	동법 제 6 조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 승계 신고	동법 제 7 조
						바. 공급자의공급 중지 신고및위해 예방 조치명령등	동법 제 32 조
						사. 안전관리자채용. 해임. 퇴직신고	동법 제 14 조
						아. 공급규정(변경) 승인	동법 제 26 조
						자. 허가의취소등	동법 제 8 조
						차. 과태료부과징수	동법 제 48 조
						카. 조정명령	동법 제 34 조
		( 신 설 )		9		○ 에너지관리자 채용. 해임. 퇴직신고	에너지이 용합리화 법제23조 제2항
		( 신 설 )		10		○ 액화석유가스및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그 부대설비의 설치또는변경공사의 시공자등록	액화석유 가스의안 전및사업 제15조제 6항및도 시사업 제12조 제 4 항

현행				개정			
분야별	인원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치수과	1- 16	( 신 설 )		치수과	11	◦ 특정가스 사용 시설안전관리자의 채용 해임신고	도시가스 사업법 제 29 조
		( 생 략 )			1-16	( 현행과같음 )	
		17			◦ 등 지방및 준용하천의 토석사력기타하천산출물(수석채취허가는제외) 채취	하천법 제 25 조항 제 1 항	
		( 생 략 )			18- 20	( 현행과같음 )	
		21			◦ 등 하천의 현저한 오손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 단속	하천법 제 25 조항 제 10 호	
		( 생 략 )			22- 65	( 현행과같음 )	
		66			◦ 도선운임의 승인	유선및 도선사업법제34조	
		( 생 략 )			67- 74	( 현행과같음 )	
		( 생 략 )			75	( 현행과같음 )	하천법 제 76 조
		( 생 략 )			76- 78	( 현행과같음 )	
		( 신 설 )	하천법 제 67조		79	◦ 실효된허가의 효력회복의 조치	하천법 제 70 조의 단서및 제 2 항
		( 신 설 )	하천법 제 16조		80	◦ 하천감시원의 임명과법령등의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	하천법 제 71 조항 제 1 항

현행				개정			
분야별	도법 연차	사무명	근거법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
		( 신 설 )			81	◦ 보상청구	법률 제378호 378호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 신 설 )			82	◦ 보상대상자의 결정	동규정 제 6 조
		( 신 설 )			83	◦ 보상금액의 산정	동규정 제 9 조
		( 신 설 )			84	◦ 보상금 지급통지	동규정 제 11 조
		( 신 설 )			85	◦ 소유권 이전등기	동규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 신 설 )			86	◦ 편입토지의 점용 및사용	동규정 제 14 조
도로과	1 - 29	( 생 탁 )		도로과	1-29	( 현행과같음 )	
		( 신 설 )			30	◦ 도로변휴게소 설치 허가 (지방도)	도로법 제 50 조 제 4 항 제 5 항 및 동법령 제 27 조 제 3 항